

[신청서 첨부서류 2]

재 산 목 록

명 칭	금액 또는 시가 (단위: 원)	압류 유무	비 고		
현금					
예금			금융기관명	(1) 은행	(2) 은행
			계좌번호		
			잔고		
보험			보험회사명	(1) 생명	
			증권번호		
			해약반환금		
자동차 (오토바이 포함)					
임차보증금 (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.)			임차물건		
			보증금 및 월세		
			차이 나는 사유		
부동산 (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.)			소재지, 면적		
			부동산의 종류	토지(), 건물(), 집합건물()	
			권리의 종류		
			환가예상액		
			담보권 설정된 경우 그 종류 및 담보액		
사업용 설비, 재고품, 비품 등			품목, 개수		
			구입 시기		
			평가액		
대여금 채권			상대방 채무자 1: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명자료 별첨	
			상대방 채무자 2: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명자료 별첨	
매출금 채권			상대방 채무자 1: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명자료 별첨	
			상대방 채무자 2: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명자료 별첨	
예상 퇴직금			근무처:	(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 원 제외)	
기타 ()					
합계					
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			면제재산 결정신청 내용:		
청산가치					

재산목록 작성 시 유의 사항

1. 현금

-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

2. 예금

-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, 정기예금·적금·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십시오.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.

3. 보험

-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, 보험증권 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(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)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4. 자동차(오토바이 포함)

-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5. 임차보증금

-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,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'차이 나는 사유'란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.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6. 부동산

-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-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7. 사업용 설비, 재고품, 비품 등

-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

8. 대여금 채권

-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,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9. 매출금 채권

-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,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10. 예상 퇴직금

-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(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, 비고란에 표시합니다.)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11.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

-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.

12. 압류 및 가압류 유무

-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·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, 그러한 압류·가압류의 결정법원, 사건번호, 상대방 채권자,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[신청서 첨부서류 4]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
13.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, 그 항목에 "별지 기재와 같음"이라고 적은 후,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